

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‘미성년자’에서 ‘18세 미만인 사람’으로 완화함(안 제21조제1호).
-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의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26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).

II. 검토의견

1. 하위법령 위임사항 구체화 필요(안 제26조제1항제4호 단서)

- 현행법 제26조제1항 본문은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(제1호), 다른 사람에게 위탁관리업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(제2호)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같은 항 단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

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.

- 안 제26조제1항제4호 단서는 위탁관리업자가 같은 호 본문(제23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)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위탁관리업자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면 영세사업자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일정기간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의 제재 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- 다만, 안 제26조제1항제4호 단서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인 위탁관리업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이를 “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”고 규정하고 있는데,

개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에 해당하는 위탁관리업자가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이고, 그 외의 예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추가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려는 취지는 아니므로,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다음과 같이 마련함.

<안 제26조제1항제4호 단서에 대한 수정의견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의 건
제26조(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 1. ~ 3. (생략) 4.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<u>경우</u> <u><단서 신설></u> 5. ~ 8. (생략)	제26조(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<u>경우</u>. <u>다만,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</u> 5. ~ 8. (현행과 같음)	제26조(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<u>경우</u>. <u>다만,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</u> 5. ~ 8. (현행과 같음)

2. 기타 사항

- 그 밖에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부칙 시행일 단서에 규정된 시행일을 “개정규정 시행일”로 명확하게 명시¹⁾하는 경미한 체계

1) 부칙 시행일 본문에 규정된 시행일은 “이 법 시행일”로, 부칙 시행일 단서에 규정된 시행일은 “개정규정 시행일”로 명확하게 지칭하여 혼동을 방지하여야 함
- 국회사무처, 『법제기준과 실제(2024 개정증보판)』, 2024. 5., p. 826

및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
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김 성 완)